양 해 각 서

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7 디지털엠파이어 A동 5층에 주소를 두고 있는 메인텍㈜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을 증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 1 조 [목적]
본 양해각서는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, 메인텍㈜이 상호협력하여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나아가 국가과학기술 및 의학기술발전과 더불어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운영원칙]
1) 본 양해각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2) 본 양해각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

제 3 조 [협력 분야]
본 양해각서의 협약당사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1)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공동연구 및 개발
2) 임상 시험 및 연구에 필요한 의학적 · 임상적 정보 공유
3) 교류협력 및 교육훈련을 위한 인력교류
4) 시설, 장비 공동 활용 및 지원
5) 정보 및 출판물의 교류
6) 보건의료분야의 공동과제 도출 및 공동사업 추진
7)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 4 조 [지적재산권]
본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개별 연구 협정 내용에 따른다.

제 5 조 [기밀유지]
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과정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 당사자의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양해각서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협약당사자는 본 조의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 본 조의 기밀유지의무는 본 양해 각서의 만료 혹은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된다.

제 6 조 [유효기간]
본 양해각서는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제 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, 종결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시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 7 조 [해지]
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, 메인텍㈜은 협약 내용을 해지 할 때는 반드시 일방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. 또한 한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 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상당한 기간(1개월)을 정해 그 시정을 서면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, 다른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.

제 8 조 [공표]
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, 메인텍㈜은 상호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의 존재 여부를 포함한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매스컴을 포함한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개하거나 알릴 수 없다. 협약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상호, 상표 등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.

제 9 조 [존속기간 및 법적 구속력]
본 양해각서는 제 5조(기밀유지) 및 제 8조(공표)를 제외하고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, 제 5조(기밀유지) 및 제 8조(공표)는 본 양해각서의 기간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10년 동안 유효하게 존속된다. 제 5조(기밀유지) 또는 제 8조(공표)의 위반에 따른 모든 손해를 제외하고,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여하한 손해배상 또는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10 조 [비용]
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, 메인텍㈜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각자의 비용 및 경비를 각자 부담키로 한다.

제 11 조 [수정 및 변경]
본 양해각서는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.

제 12 조 [준거법]
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.

제 13 조 [분쟁의 해결]
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협약당사자는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이상의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, 메인텍㈜은 본 양해각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3월 7일

MEINNTECH
MEDICAL INNOVATION TECHNOLOGY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
시민대로 387 디지털엠파이어
A동 5층

메인텍(주)
대 표 이 상 반 (인)

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
Gachon Medical Device Convergence Center

인천광역시 남동구
남동대로 774번길 21

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
센터장 김 선 태 (인)